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1284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128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단1248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20. 9. 9.

판결 선고 2020. 9. 2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단1248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39,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갑 제1호증)의 내용은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매도대금을 받아서 준다는 의미였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그 주식 매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 사건 합의서의 금원 지급 약정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의 주식 매도대금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문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주장의 조건은 금원 지급 의무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누락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중 일부 주식을 보유한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상황이므로 위 주식 매도 과정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원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금원 지급 약정이 피고 주장 내용과 같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D 인수계약이 무산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3 ~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평근

판사민철기

판사김광진